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2021. 9. 2.
복 지 건 설 위 원 회
전문위원 김 진 철

1. 제안경위

가. 의안번호: 1625

나. 제 안 자: 성동구청장

다. 제출일자: **2021년 8월 20일**

라. 회부일자: **2021년 8월 24일**

2. 제안이유

「도로명 주소법」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법령 개정 취지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제명을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」에서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

나.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사항을 규정함(안 제2조)

다.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및 광고비용을 규정함 (안 제3조 및 제4조)

라. 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사항을 규정(안 제5조)

마. 주소정보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(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)

바.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손해배상공제(안 제13조)

사. 주소정보의 홍보 및 교육 내용 규정(안 제14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

1) 「도로명주소법」 제9조, 제11조, 제12조, 제19조, 제22조~제25조, 제27조, 제29조, 제31조, 제33조

2) 「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전부개정안」 제26조, 제54조, 제74조, 제57조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, 별첨

다. 기　　타

1) 입법예고(2021. 7. 8. ~ 7. 29.) 결과: 특기할 사항 없음

2) 규제심사 결과: 신설·강화 규제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 결과: 특기할 사항 없음

4)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: 특기할 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「도로명 주소법」의 전부개정 (2021. 6. 9. 시행)에 따라 행정안전부 「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」을 반영하여 개정취지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.

○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,

- 「도로명 주소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전부개정하는 것으로, 종전 25개 조문이

15개 조문으로 축소하여 개정하였으며

- 안 제2조에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규정 신설하여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고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정확한 위치표기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해당 시설물의 실제 위치와 지도상의 위치가 상이함에 따른 이용 불편 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.

-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산정과 고시 내용을 신설하여 일관되지 않은 제작비용 산정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였으며, 주소정보 안내도와 주소정보 안내판에 광고 게재 및 그 비용에 관한 사항을 무료와 유료로 구분하여 규정하였고

-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「도로명 주소법」 전부개정에 따라 위원회 명칭 변경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.

(변경 전)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위원회

(변경 후)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소정보위원회

- 안 제13조에서는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해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주소정보의 홍보 ·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

○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, 본 조례안은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

는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여겨지며,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전부개정된 것으로 도로명 주소체계를 보다 안정화 · 고도화하고 다양한 주소정보의 활용을 활성화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.